

#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

## 폐지조례안

### 심사보고서

2022. 11. 2.

사회건설위원회

#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22년 10월 21일

나. 제출자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: 2022년 10월 26일

라. 상정일자: 제24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(2022. 10. 31.) 상정 의결

#### 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도시국장 김창환)

가. 제안이유

- 상위법령의 제·개정, 폐지 등 변경 사항과 집행 현황을 반영하여 자치법규를 폐지함으로써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「도시재개발법」이 폐지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이 삭제되어 존속이 불필요해진 「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」를 폐지

#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최종란)

○ 본 조례안은

- 「도시재개발법」이 폐지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위임 사항이 삭제되어 존속이 불필요해진 「서울

특별시영등포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」를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임.

○ 주요 내용은

「도시재개발법」이 폐지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이 삭제되어 존속이 불필요해진 「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」를 폐지하는 사항으로,

○ 본 조례안은

-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2022년도 1차 ‘상위법령 불부합 및 사문화 자치법규 정비계획’에 따라 영등포구의 법령 불부합 및 사문화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것으로, 「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」는 「도시재개발법」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에 관해 규정하고자 제정되었으나, 상위법인 「도시재개발법」이 폐지됨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 제고를 위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.

#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제 53 호
----------	--------

제출연월일: 2022. 10. .  
제 출 자: 영등포구청장

## 1. 제안이유

상위법령의 제·개정, 폐지 등 변경 사항과 집행 현장 상황을 반영하여 자치법규를 폐지함으로써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고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「도시재개발법」이 폐지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이 삭제되어 존속이 불필요해진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.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해당 없음

나. 예산조치: 해당 없음

다. 협의사항

1) 규제심사: 신설·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

2) 부패영향평가·성별영향분석평가·인권영향평가: 해당없음

라. 입법예고: 생략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는 폐지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